

2019년 11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연번	홍보내용	담당부서
1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 운영 안내	도로과
2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건설지원과
3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운영 안내	소상공인정책과
4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정책과
5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소상공인정책과
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안내	자치행정과 (진상규명위원회)
7	농어촌(군)지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교통정책과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안내	장애인복지과
9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요령 안내	동물방역과
1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신청 안내	기후대기과
11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기후대기과
12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조심기간 안내	산림녹지과

시·군 홍보사항

시·군	홍보내용	담당부서
밀양시	제22회 밀양얼음골사과 축제 개최 홍보	6차산업과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과 ☎ 055-211-2985)

도내 지방도 상 야생동물 사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금 제도란?

도내 지방도 전 노선(국도, 시·군도 제외)에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 사체 발견시 최초신고자에게 10,000원 지급, 사체발견 후 자체처리시 2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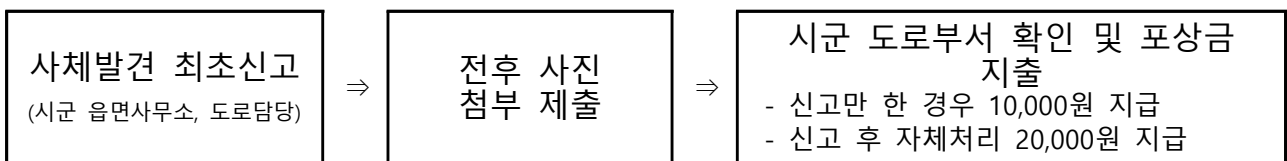
II.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동 중인 차량에 치여 죽는 것

III. 로드킬 예방 및 대처법

- 적정속도 유지(특히 야간에 주의)
- 야생동물 빈번 출몰지역 운행시 감속 운행
- 야생동물 발견 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린 후 대기
- 야생동물과 충돌 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야 2차 사고 예방

IV. 처리절차



V. 포상금 지급기준

- 지방도상 동물사체 최초발견 신고시 : 10,000원
- 지방도상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 후 신고시 : 20,000원

VI. 신고방법

- 전화해당 시·군·구·읍·면에 신고(연락처는 붙임 홍보 리플릿 참조)
-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제출

붙임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홍보 리플릿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동 중인 차량에 치어 죽는 것으로 야생 동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행 중이던 차량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로드킬 발생원인

- 산짐과 녹지의 훼손 등으로 서식지 파괴
-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이동로 단절
- 차량의 증가와 과속
- 먹이상을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

로드킬 예방 및 대처법

- 속도제한 구역 (특히 야간)
- 야생동물 빈번 출몰지역 운행 시 감속 운행
- 야생동물 발견 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린 후 대기
- 야생동물과 충돌 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야 2차 사고 예방

WARNING ROAD KILL

우리도에서는 지방도상 로드킬 관련 대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지급

- 지방도상 동물사체 회수발견 신고시: 10,000원
- 지방도상 동물사체 발견 및 제거 후 신고시: 20,000원

지방도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요령

사체발견 (주민) → 신고 (사건발생 후) → 접수 (시군도로부서, 민방위대 담당자) → 사체처리 (수거함, 현상미해결 시 120기동대 후)

해당 시·군·구·읍·면에서 신고합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체를 도둑에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2차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내선번호)
경주시	건설도로과	0539-1111	3833-1111
의성군	환경자연과	0535-213-2114	3839-1111
영선군		0535-272-2114	3839-1111
영주군		0535-230-2114	3839-1111
회양군		0535-230-2114	3839-1111
진해군		0535-248-2114	3839-1111
진주시	건설과	0535-749-8257	0535-749-2114
홍성시	건설과	0535-850-8234	827-2857
서천시	도로과	0535-831-3390	0535-831-2114
경주시	도로과	0535-330-3854	3277-9430
달성시	건설과	0535-286-5258	0535-286-2114
계천시	도로과	0535-439-4523	0535-439-3000
영천시	도로관리과	0535-382-2794	0535-382-2114
영북군	건설도시과	0535-570-2114	0535-570-2114
영남군	건설과	0535-580-2616	0535-580-2114
영양군	건설교통과	0535-570-1764	0535-570-1000
고성군	도시개발과	0535-673-2585	0535-673-2114
남해군	건설교통과	0535-890-3214	0535-890-2114
죽영군	건설교통과	0535-890-2527	0535-890-2114
선량군	안전건설과	0535-975-6714	0535-975-6000
영광군	안전건설과	0535-960-4823	0535-960-6114
계천군	건설과	0535-940-3553	0535-940-2114
영천군	건설과	0535-940-3474	0535-930-2114

경상남도 민방위대 24시간 비상연락처: 112, 119, 112, 2645 FAX: 055-271-2659

Bravo Gyeongnam

www.gyeongnam.go.kr

소중한 야생친구를 지켜주세요

WARNING ROAD KILL



당신의 차에 갑자기 동물이 뛰어든다면?

경상남도 GYEONGNAM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 055-211-2926)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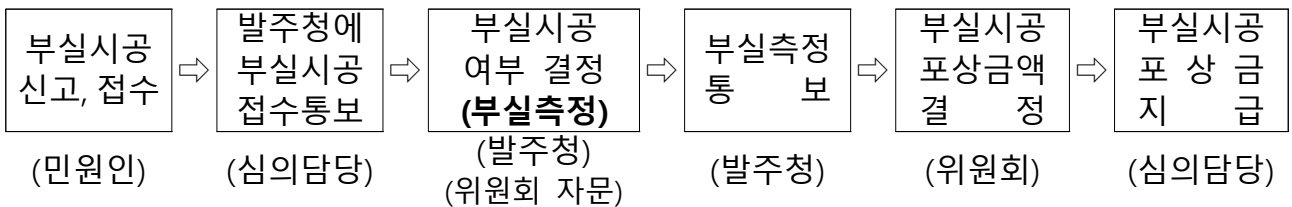
I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II. 부실시공 신고대상은?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III. 처리절차



IV.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 상 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1,0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6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2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붙임서식 작성 후 제출

[별지 서식]

부실시공 신고서 (제8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4)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점 가맹희망자

□ 상담 제외대상

-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 소비자 피해규제 :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 채권·채무 등 사적 법률관계의 분쟁
-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와의 거래행위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 상담방법

- 방 문 : 경상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우 편 : (우)51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 화 : (055)211-7979 ※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친구
- 팩 스 : (055)211-7770
- 인터넷 : 경상남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통상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6)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 지원
 - ※ 2019년 한시지원(2020년 미시행)

□ 신청인

- 일반사업장 :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
- 공동 주택
 - 직영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 위탁운영 : 위탁업체 사업주(표준협약서 첨부)

□ 신청방법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내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 ※ 팩스신청 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번호 전화 문의 후 전송, 전송 오류 등으로 미접수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착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농업경영체증명서)
 - ※ 사업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개인정보동의서 추가 제출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19. 9. 9 ~ 12. 31.	3분기 지원금 : '19년 12월중 4분기 지원금 : '20년 2월중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각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함께 만드는 원전의 새로운 경남

경남 소상공인 여러분! 사회안전망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신가요?
- 지금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가요?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세요!
-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청기간** 2019. 2. 1 ~ 12. 31. ※ 2019년 한시 지원(2020년 미시행)
- 지원조건**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기타사항**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

문의처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055)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055)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211-3416	함안군	미래산업과	580-2694
	창원시	경제실리과	225-33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8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6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670-2304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650-0912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193
	사천시	지역경제과	831-3080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805
	김해시	지역경제과	330-3416	산청군	경제전략과	970-6812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359-50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845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639-4146	거창군	경제교통과	940-337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392-3733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5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0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2019. 2. 11 ~ 12. 31.
- 지원조건**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최대 50%, 2년간 지원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 보험료(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금액(B)	정부	20,475	23,400	1,5795	17,550	-	-
	경남	12,285	14,040	26,325	29,250	32,175	35,100
본인부담액(A-B)	8,190	9,360	10,530	11,700	32,175	35,100	38,025
지원율	정부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30%			
	경남	보험료의 30%		보험료의 50%			

- ※ 1 ~ 4등급은 중복 지원으로 최대 80% 지원 가능
- ※ 2020년에는 지원율과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e-mail(soaya@korea.kr)
* (우편주소)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우 51154)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사항**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
- 문의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6

가맹점 결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경남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23)

「경남사랑상품권」이란 ?

- 경남도가 발행하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스마트폰의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구매하기

- 개인구매자 : 특별할인 10%(100억원 판매시 까지) / 상시할인 5%



제로페이 상품권 앱 ▶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경남사랑상품권 선택 ▶ 상품권 권종 선택(5천원·1·3·5·10만원권) ▶ 구매, 충전완료

- 법인(대량)구매자

상품권 구매 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 판매대행점(☎1522-2270) 발송 ▶ 대상자 등록 ▶ 대량 선물하기(핀코드 문자 발송) ▶ 수령자 핀코드 등록, 충전완료

【사용 가능 제로페이 상품권 앱】



※ 체크페이 : 전 은행 계좌 가능 / 단, 씨티은행·SC제일은행·카카오뱅크 제외

소비자 상품권 사용하기 ※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 제로페이 상품권 앱 ▶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 ▶ 결제하기

- ① 소비자 촬영 QR스캔 선택 ▶ QR 촬영 ▶ 결제금액 입력 ▶ 결제 완료
- ② 리더기 스캔 QR/바코드 제시 ▶ 가맹점 리더기(POS) 스캔 ▶ 결제 완료

- 사용처 : 경남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34,000여개소('19.10말기준, 지속 모집 중) 편의점 / 파리바게뜨 / 다이소 / KTX역사 내 매장 / 농협하나로마트

※ 이마트, 대규모 하나로마트(창원남양·반림·사파·창원·내서·삼계·호계, 양산물금·증산점) 등 (준)대규모점포 사용 제외
 가맹점 찾는 법 : ① www.zeropay.or.kr에서 가맹점 찾기 ②네이버 '제로페이' 검색



- 상품권 선물 하기 상품권 메인화면 ▶ 선물하기 ▶ 권종 ▶ 이름, 휴대폰번호 / 메시지 입력 ▶ 보내기 (※ 권종별 미사용 상품권만 선물하기 가능)

상품권 문의처 시스템 1670-0582(제로페이콜센터) / 기타 1899-9350(경남소상공인연합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안내

(자료제공: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 010-9897-7910)

□ 신고접수 개요

- 부마민주항쟁 :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자격

- ①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사망한 자, ㉡ 행방불명된 자, ㉢ 상이를 입은 자, ㉣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② 유 족 :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 ③ 친 족 :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청 서류

- ①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 ②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 ① 전화 ② 우편 ③ 방문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 ※ 2019. 5월 이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 예정
-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우선 문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2019년 12월 23일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문의전화 010-9897-7910 ※ 위원회 접수 전용 번호

홈페이지 www.buma.go.k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 접수방법 : 부마 또는 방문 접수 - 위 위원회에 접수 시, 추후 안내 문자 발송
- 신고자격 : 가. 관련자 : 1970. 10. 15. ~ 1980. 10. 31. 사이의 부산·부산 및 합동 등 권내 일련해서 학생들과 대학생이었던 민주화운동가 관련자(가)나 사망한 자, 근·생존생존인 자, 구·신야원 구·신 피사체 등으로 불리는 실명을 알려 나 그 부당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 부마항쟁 또는 구·신야원 자 중 공소기간(유죄판결 효력 발생) 또는 무사정체를 알지 못 하는 자
나. 유족
다. 친척관계가 있는 자
라. 친척·유족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농어촌(군)지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055-211-4364)

농어촌지역 통합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도민의 농어촌버스 이용에 편리함과 여유를 찾아 드립니다.

□ 버스정보시스템(BIS)이란?

- 버스의 운행정보를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보안내기와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구축개요

- 구축기간 : 2020년 1월 ~12월
- 해당지역 : 도내 10개 군(郡)지역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구축설비
 - (수집분야) 차량단말기(OBE) 및 자동승객계수장치 215대
 - (가공분야) 통합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1식
 - (제공분야)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BIT) 179개소 및 행선지안내전광판 215식

□ 정보제공 서비스

【버스 도착 정보】



【버스 잔여좌석 정보】

노선번호	종류	1차	2차	3차
100-1	원시추	1전 경내도청	무정	
8-1	15	5전 교육청	좌422	
18	24	12전 경찰서	이모	
11	30	15전 소방서	이모	
12		18전 소방서	이모	

【행선지 안내 전광판】



□ 제공매체

-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국가대중교통정보망(TAGO), 인터넷 포털 등

□ 기대효과

- (이 용 자) 버스 운행정보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 증진, 정시성 확보
- (버스업체) 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통한 경영 합리화 도모
- (지 자 체) 빅데이터에 의한 버스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 될 때까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이란?

시·군·구에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II. 점검기간 및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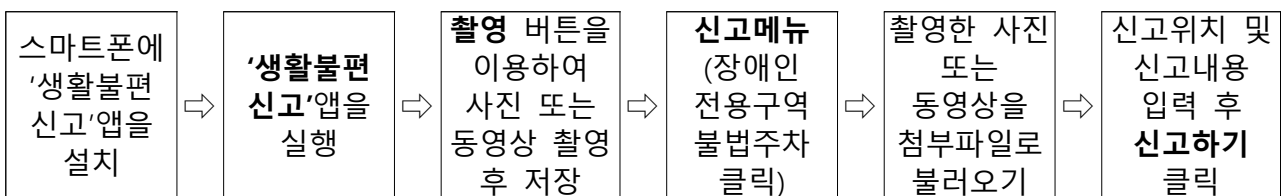
올해는 11월 11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1개월간 점검을 실시하며, 주민 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비롯한 주차위반(민원) 빈발지역이 점검대상이며,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중점 점검기간 및 단속구역이 지정됩니다.

III. 주요 단속사항과 과태료 금액은?

주요 단속사항	과태료	비 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10만원	
○ 주차 방해행위 -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50만원	
○ 주차표지 부당사용 -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200만원	위·변조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IV.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 결과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 → 과태료 10만 원 (표지 없이 주차)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물건을 쌓거나 2면이상 주차)



‘(구)표지 사용’ → 과태료 10만 원 (표지 미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요령 안내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055-211-6563)

최근 경기·인천 지역 돼지 농장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반 국민, 축산관계자의 행동요령은?

일반국민 행동요령

- ▶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확인하시어 해당국가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가공품,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만두·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 ▶ 만약 실수로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게 된 경우 공항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여주시요.
- ▶ 아울러,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할 경우 접촉하지 마시고, 즉시 관계 기관(가까운 시군 환경부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행동요령

- ▶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외여행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을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시 공항에서 소독을 받고 최소 5일 이상 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 ▶ 농장주는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농장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 ▶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차단방역 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농장주는 매일 가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번호 : 1588-4060, 1588-9060)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걸립니다.**

 - **국내 유통 중인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 감염된 돼지는 전량 살처분·매몰 처리되며, 이상이 있는 축산물의 경우 국내로 유통되지 않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70°C에서 30분 이상 가열시 사멸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란?**
 -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릅니다.
 - 잠복기 :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4일 ~ 19일까지**
 - 바이러스 생존력 : 매우 강해 **냉동육(1000일), 소금에 절인고기(182일), 부패된 혈액(15주)** 등에서도 장기간 생존 가능
 - 전파 :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야생멧돼지 또는 침, 분변 등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되며, 오염된 남은음식물 사료를 통한 감염 우려
 - 발생 : 전 세계적으로 **53개국**(유럽 15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9개국)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은?**
 - 2019년 9월 16일 이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4개 시군 14개 농장에서 발생**
 - 2019년 10월 2일 연천 DMZ 구역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이후 **10월 17일까지 연천, 철원, 파주 지역(민간인통제구역) 총 9마리의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는?**
 - 신고 ⇒ **초동방역팀을 투입** ⇒ 주변을 소독⇒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48H) 발령**
 -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의 돼지는 **살처분·매몰, 역학조사, 인근 농장 정밀검사**
 ※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살처분이 핵심 적인 방역조치입니다
 - **확산 방지** : 차량 등에 의한 전파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강원 중점관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 발생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차량통제
- ※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홍보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질 병	대 륙	국 가 명
구제역 (79개국)	아시아 (33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홍콩 포함),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43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유럽 (1개국)	러시아
	아메리카 (2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47개국)	아시아 (20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12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유럽 (14개국)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마케도니아공화국,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아프리카 돼지열병 (53개국)	아시아 (9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5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자료제공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84)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I.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 용
조기폐차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개조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DPF부착	5등급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Tier-1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II. 지원대상

- 조기폐차 :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 저공해엔진 개조 및 DPF부착(건설기계 DPF부착 포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Euro-3이전) 적용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III. 지원금액

- 조기폐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000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400만원 정액 지원(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

- 저공해엔진 개조 및 DPF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장치비	유지관리비	
LPG엔진개조	4,059 ~ 4,169	4,012 ~ 4,122	47	310 ~ 420
경유차DPF	3,724 ~ 9,757	3,262 ~ 9,295	462	372 ~ 1,032
건설기계DPF	8,240 ~ 10,444	7,778 ~ 10,577	462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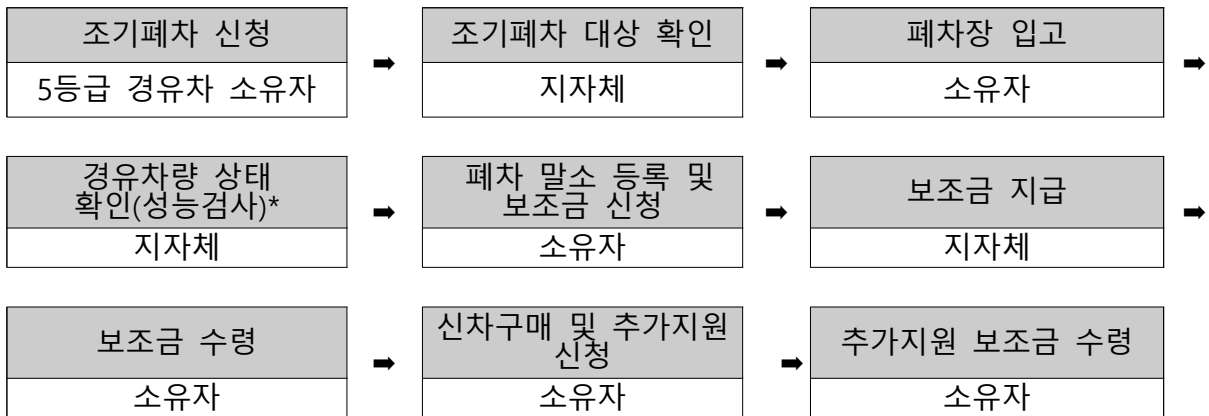
-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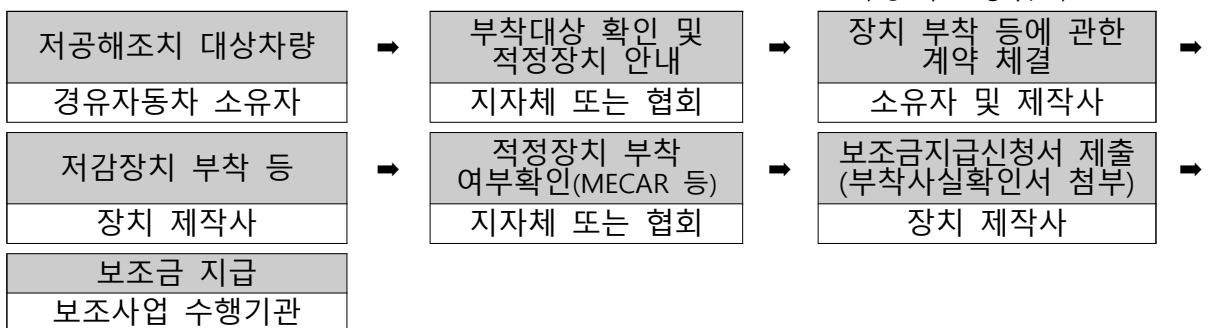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IV. 참여방법 및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 저공해조치 신청(DPF부착, LPG엔진개조 등) :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시군에 따라 사업추진방법·신청접수기한·사업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여희망 사업별 차량등록지 시군(담당부서) 등에 사전 확인 필요

사업별	시·군	연락처	사업별	제작사	연락처	
조기폐차	창원시(환경정책과)	055-255-3525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진주시(환경정책과)	055-749-8641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통영시(환경관리과)	055-650-5473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사천시(환경위생과)	055-831-2766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김해시(환경위생과)	055-330-3354		(주)에코닉스	1666-3243	
	밀양시(기후대기과)	055-359-5316		(주)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거제시(환경과)	055-639-3956		화이버텍(주)	031-942-9008	
	양산시(환경관리과)	055-392-2614		(주)씨엠씨	031-358-6752	
	의령군(환경위생과)	055-570-2603	건설기계 DPF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함안군(환경과)	055-580-2424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창녕군(환경위생과)	055-530-1603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고성군(환경과)	055-670-5874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남해군(환경녹지과)	055-860-3274		(주)에코닉스	1666-3243	
	하동군(환경보호과)	055-880-2564		(주)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산청군(환경위생과)	055-970-7104		LPG 엔진개조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031-940-2560
	함양군(환경위생과)	055-960-4267			엑시언	031-270-6300
	거창군(환경과)	055-940-3492	건설기계 엔진교체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합천군(환경위생과)	055-930-3313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94)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한양도성 내(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지속가능물류발전법」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 2019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운행제한 지역 :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과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제한일시	2019년 7월 1일부터 매일(06시부터 19시~21시까지)
대상차량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차량 제외)
벌 칙	과태료 25만원(12월 1일부터 부과)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녹색교통지역 진출입 48개소 지점)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은?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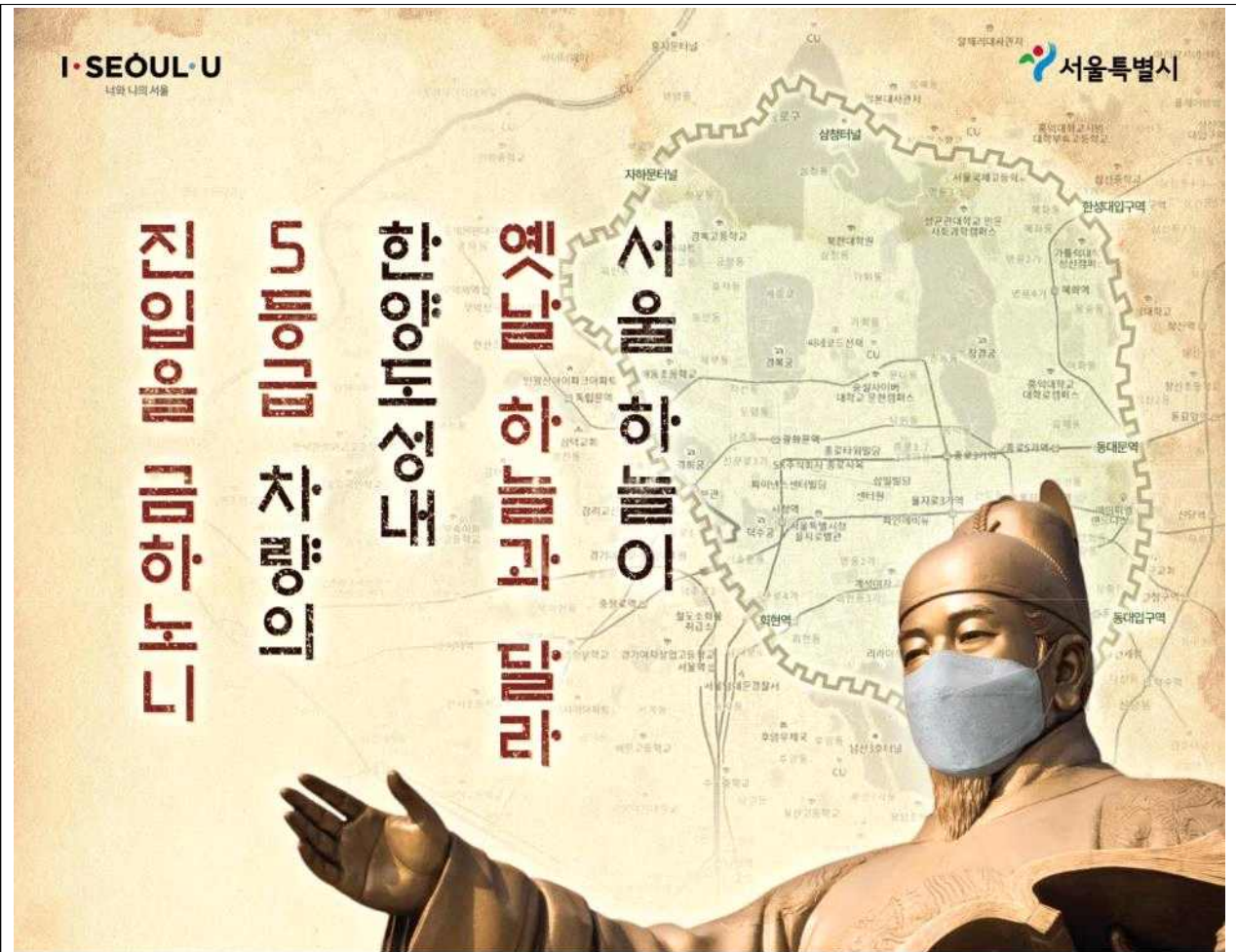
조회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 : 1833-7435

- 서울시 안내 페이지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tr_code=short)

-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20, 02-2133-2228, 02-2133-2234

□ 안내 포스터



2019년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는 자동차가 발생원인!
더 맑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제한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차공예조차량 등
 ●차공예사업 지원 : 거주자-생계형 초기배차 최대 300만원, DPP 90%(생계형 100%) 지원 등 (☎ 120)

제한 시간 (· 시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오전 6시 - [오후 7시~오후 9시]

녹색교통지역 내에 위치한 청계천·남대문·동대문시장 등의 화물, 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 및 시장 방문 차량을 고려해 부분 제한

제한 지역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15개동)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의동, 을지로동

시행 시기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녹색교통지역 진출입 48개소 지정)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몇등급인지 알아보세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조심기간 안내

(자료제공 :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 055-211-6833)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경상남도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11.1~5.15.)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음
 - ↳ 시·군 산림부서에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 ↳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철저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 버리는 행위 절대 금지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부서(055-211-6833),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2.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안전취약계층>

-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종사자 또는 도우미>

-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일반국민>

-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4.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괘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Q & A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1.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2.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제,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피 주도록 합니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니다.

3.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니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4.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결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니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

제22회 밀양얼음골사과 축제 개최 홍보

(자료제공: 밀양시 6차산업과 ☎ 055-359-7131)

□ 축제개요

- 축 제 명: 제22회 밀양얼음골사과 판매·홍보 행사
 - 슬로건: “끼림 그리고 외출”
- 행사기간: 2019. 11. 30.(토) ~ 12. 1.(일) 2일간
- 행사장소: 부산광역시 명지1동 국제신도시내(명지중학교 옆) 울림공원
- 주최·주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손제범)

□ 프로그램 내용

구 분	프 로 그 램
홍보행사	우수사과 품평회, 밀양농특산물 홍보, 즉석게임(사과깍기 등)
공연행사	축하 공연, 색소포니스트 공연
경연행사	얼음골사과 사랑! 명지 사랑! 노래자랑, 얼음골사과 골든벨
체험행사	얼음골사과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시식행사	사과 활용 시식요리 제공(사과 동동주, 수육+사과, 사과전 등)

※ 축제 홈페이지(<http://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kr/>)

□ 홍보내용

- 기관 직원 및 단체,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축제 기간 중 도내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협조